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특수경력직 공무원(별정직 공무원)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('08.12)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(안 제4조의2)
-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(안 제11조제1항)
-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(안 제11조제2항)
-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 (안 제12조)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(별정직 공무원)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('08.12)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을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및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임.

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충청북도가 국제화·세계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유익한 조치이며,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별정직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업무보충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.